

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3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. 12.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위탁하고자,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
- 나. 위탁의 필요성
-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 필요
 -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·사회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민·관을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가능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 수립
- 교육 및 보충교육 실시, 교육비용 징수 등

라.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
바. 2026년 소요예산: 없음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○ 해당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성 확보
3.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옥외광고물 관리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인력 확보에 용이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기적인 실적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 및 위탁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 안전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5조
- 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4. 추진일정

- 가.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10월
- 나.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: 10월 ~ 11월
- 다. 지정기관 선정: 10월 ~ 11월
- 라. 지정협약 체결: 12월

붙임

근거 법령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2조(광고물등에 관한 교육)

-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·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이 다른 시·군·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등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, 자격,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0조(교육의 위탁 등)

-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.
-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, 수강절차,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25조(교육의 위탁 등)

-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으자의 임무,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해야 하며,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, 위탁받은 자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주소,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,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.
-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

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.

-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,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-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.